

##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관광과

제정 2001·8·6 조례 제 387호  
개정 2004·6·21 조례 제 492호  
개정 2005·3·15 조례 제 542호  
개정 2008·3·3 조례 제 705호  
일부개정 2020·10·7 조례 제1643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도자기술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이천시 도자기 발전과 이에 종사하는 도예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며, 도자기 명장의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이천시 도자기명장”(이하 “명장”이라 한다)이란 장인 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도예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도자기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20·10·7>

**제3조(선정분야 및 기준)** 명장은 성형, 조각, 서화, 디자인, 기타 도자기 제작관련 분야를 포괄하여 선정하되 당해연도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8·3·3]

**제4조(선정방법)** ① 명장은 매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명장선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. <단서신설 2020·10·7>

② 제3조의 선정분야와 기준은 선정일 2개월 전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·10·7>

③ 제1항 및 제2항 외 선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정한다. <개정 2020·10·7>

**제5조(명장의 자격)** 명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천시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도예산업에 30년 이상 직접 종사한자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주민등록법상 50세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.

**제6조(명장의 선정신청절차)**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명장으로 선정받고자 하는

자는 시장 또는 읍·면·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
② 읍·면·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예산업 관련 단체의 대표자로부터 사전 추천을 받을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 7일 전에 명장선정 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통보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에 관한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**제7조(명장의 선정)** ① 명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선정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“명장”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장증서를 수여한다.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〈개정 2004·6·21〉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8조(위원회의 설치)**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 분야의 명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,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 분야별 인사와 도자산업 등 이와 관련있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〈개정 2005·3·15〉

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**제9조(명장에 대한 대우)** ① 시장은 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우를 할 수 있다.

1. 사업장에 명장 인증서 부착
2. 도자기 관련 행사시 공식 초청자로 관리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**제10조(실비변상)**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이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4·6·21 조례 제492호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연구활동비지급에관한적용례)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.

부칙 <2005·3·15 조례 제54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·3·3 조례 제70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·10·7 조례 제164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